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국가지식재산국

2026년 6월 27일 08:20 발표

(1982년 8월 23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채택

1993년 2월 22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01년 10월 27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3년 8월 30일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개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6년 6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에서 전면 개정)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상표등록의 조건

제3장 상표등록의 신청

제4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등록결정

제5장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양도 및 말소

제6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7장 상표관리

제8장 등록상표 전용권의 보호

제9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표관리를 강화하며,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규범화하고, 생산·경영자로 하여금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도록 하며,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 및 생산·경영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① 이 법에서 “상표“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지를 말하며, 상품상표 및 서비스상표를 포함한다. 이 법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준용한다.

② 이 법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 상품거래서류 등에 사용하는 행위 또는 광고, 전시 및 그 밖의 상업활동에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고 구별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전항의 상표 사용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용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 상표업무는 당과 국가의 지식재산 전략 및 정책적 배치를 관철·이행하여야 하며, 상표의 보호·활용·관리 및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조 ①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전국의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상표업무 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상표관리업무를 담당한다.

②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상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은 직무 및 권한에 따라 상표 집행업무를 담당한다.

③ 상표등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문과 상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부문은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조 ①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등록결정을 받아 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 한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시를 표시할 권리를 가지며,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향유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②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6조 ① 이 법에서 “단체표장“이란 산업협회 등 사회단체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상거래 활동에서 사용하고, 사용자가 해당 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증명표장“이란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능력을 가진 조직이 관리하고, 해당 조직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원산지, 원재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한 품질 특성을 증명하기 위한 표지를 말한다.

③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규정한다.

제7조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은 공동으로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공동으로 향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

제8조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을 의무화한 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야 하며, 등록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① 상표등록의 출원 및 상표의 사용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권리를 남용하여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표사용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상표관리부문 및 상표 집행부문은 법에 따라 상표관리 및 집행을 강화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등록의 출원 또는 기타 상표 관련 사무는 직접 처리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제11조 ①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국 내에 상시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상표 국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이 확립한 제도를 준수하며,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3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정보화·지능화된 상표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상표업무 처리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상표 정보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적시에 공개하고, 상표 정보서비스 및 관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2장 상표 등록의 조건

제14조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조직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지로서 문자, 도형, 알파벳 문자, 숫자, 입체표장, 색채의 조합, 소리, 동작표장 등 및 이들 요소의 결합은 모두 상표로서 등록출원할 수 있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표지는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중국공산당의 명칭, 당기, 당휘, 훈장 또는 중요한 이론적 성과,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상징적 요소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2.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국가, 군기, 군휘, 군가, 훈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및 중앙기관과 국가기관의 명칭·표지, 소재지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상징적 건축물의 명칭·도형과 동일한 것
3. 외국의 국명, 국기, 국장, 군기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다만,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정부 간 국제기구의 명칭, 기(旗), 휘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다만, 해당 기구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중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관리 또는 보증의 실시를 표시하는 공식 표지 또는 검사 인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다만,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적십자” 또는 “적신월”의 명칭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
7. 민족 차별적 성격을 가진 것

8. 기만성이 있어 상품의 품질, 공정, 원재료 등의 특성 또는 원산지에 대하여 공중이 오인·혼동하기 쉬운 것
9.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그 밖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제16조 ① 현금 이상 행정구역의 명칭 또는 공중에게 알려진 외국 지명은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지명이 다른 의미를 가지거나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의 구성부분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미 등록된 지명을 포함한 상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 국가공원 표지, 올림픽 표지, 특별표지 등의 표지를 상표로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 ① 등록출원하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하며, 식별이 용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표지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1.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또는 모델명만으로 구성된 경우
2. 상품의 품질, 주된 원재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그 밖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② 전항 각 호의 표지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고 식별이 용이하게 된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다.

제18조 입체표장, 색채의 조합, 소리, 동작표장 등을 상표로 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성질로부터 발생하는 형상·색채의 조합·소리·동적 효과 등,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색채의 조합·소리·동적 효과 등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색채의 조합·소리·동적 효과 등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다.

제19조 ①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의 필요를 명백히 초과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기망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등록출원하는 상표는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타인이 이미 등록하였거나 선출원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등록출원하는 상표가 타인의 중국 내 미등록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한 것으로서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하지 아니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상품에 관하여 등록출원하는 상표가 타인의 저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한 것으로서 공중을 오인하게 하여 해당 저명상표 보유자의 이익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제22조 ①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권한 없이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의 상표를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②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상표가, 타인이 선사용한 미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신청인이 전항에서 규정한 관계 이외의 계약·업무 왕래 관계 또는 기타 관계로 인하여 타인의 상표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신청한 경우, 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23조 ① 상표에 상품의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상품이 그 지리적 표시가 나타내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어서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며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이미 선의로 등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유효하다.

② 전항의 지리적 표시란 특정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나타내고,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주로 그 지역의 자연적 요소 또는 인문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표지를 말한다.

제24조 상표등록의 출원은 타인의 기존 선행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고의로 선점하여 등록출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상표대리기관은 자신이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표의 등록출원 외에는 다른 상표를 등록출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상표 등록의 출원

제26조 ① 상표등록 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상품의 분류 및 상품명을 기재하여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상표등록 출원인은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상품류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③ 상표등록 출원 등 관련 문서는 서면의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적 데이터 교환 등의 방식으로 그 기재내용을 유형적으로 표시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열람 및 확인이 가능한 데이터 전자문서는 서면 방식으로 본다.

제27조 등록상표를 지정사용상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8조 등록상표의 표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상표등록 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상표등록 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상표등록 출원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다시 출원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우선권 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출원 시 서면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야 하며, 최초의 상표등록 출원서류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상표등록 출원서류 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① 상표가 중국 정부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국제박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최초로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전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 출원 시 서면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이 전시된 박람회의 명칭, 전

시상품에 해당 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및 전시일자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우선권 주장을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1조 상표등록 출원을 위하여 신고하는 사항 및 제출하는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한다.

제4장 상표등록의 심사 및 등록결정

제32조 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하여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상표등록 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비심정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심사과정에서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상표등록 출원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설명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설명 또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심사결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등록출원된 상표가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출원을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5조 2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상표를 예비심정하고 공고한다. 같은 날 출원한 경우에는 먼저 사용한 상표를 출원공고(초보심정 공고)하고 공고하며, 다른 출원인의 출원은 거절하고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36조 출원공고(초보심정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누구든지 이 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결정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7조 출원거절 또는 공고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상표에 대하여 국무원 상표

관리부문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 ① 출원공고(초보심정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이의신청인 및 피이의신청인의 사실 및 이유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조사·확인한 후,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의신청인 및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②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등록 허용 결정을 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등록 불허 결정을 한 경우 피이의신청인이 이에 불복하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재심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의신청인 및 피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이의신청인이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① 법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한 출원 거절결정 또는 등록불허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거절결정, 등록불허결정 또는 재심사 결정은 확정된다.

② 심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등록이 허용된 상표의 경우, 상표등록 출원인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출원공고(초보

심정 공고) 2개월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해당 상표의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등록 허용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용자의 악의로 인하여 상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0조 ①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 재심사 신청에 대하여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적시에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은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 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상표 이의심사, 거절결정불복심사, 등록불허결정 불복심사 및 무효선고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관련된 선행권리의 확정이 인민 법원에서 심리 중이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 중인 다른 사건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즉시 심사 또는 심리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제42조 ① 상표등록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가 상표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에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정정을 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정정은 상표출원서류 또는 등록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등록상표의 갱신, 변경, 이전 및 말소

제43조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등록결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4조 ①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만료 전 12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갱신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갱신등록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갱신등록의 존속기간은 매회 10년으로 하며, 해당 상

표의 직전 존속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갱신등록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②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갱신등록된 상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5조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명의, 주소 또는 그 밖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6조 ① 등록상표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은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신청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해당 등록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등록상표를 이전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동일한 상품에 등록된 유사상표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③ 혼동을 초래하기 쉽거나 그 밖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전에 대하여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등록상표의 이전이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부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향유한다.

제47조 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해당 표장에 필요한 주체 자격 및 감독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48조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 또는 등록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고자 신청한 경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그 말소를 승인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 또는 해당 지정상품 부분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소멸한다.

제49조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한 경우, 말소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타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해당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한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장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

제50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7조부터 제19조 까지 및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하여야 하며, 기타 단위 또는 개인도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재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일부터 5년 이내에 선행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인 등록에 대하여는 저명상표 보유자는 5년의 기간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②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등록상표 무효선고 청구를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상표를 유지하거나 등록상표를 무효로 선언하는 재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재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 재정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법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정 또는 등록상표 유지 재정이나 등록상표 무효선고 재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결정 또는 재정은 확정된다.

제53조 ① 이 법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선고된 등록상표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이를 공고하며, 해당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 또는 재정은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이미 판결하고 집행이 완료된 상표권 침해사건의 판결·재정·조정조서 및 상표 집행부문이 이미 처리하고 집행이 완료한 상표권 침해사건의 처분결과와 이미 이행된 상표 양도계약 또는 상표 사용허락계약에 대하여 소급효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권자의 악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금, 상표 양도대금 또는 상표 사용허락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히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상표 관리

제54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출원행위를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경고를 부과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1. 이 법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표지임을 알면서도 상표로 등록출원한 경우

2. 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3. 고의로 이 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제55조 ① 상표권자는 직접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등록상표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다. 사용허락자는 피허락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하여야 하며, 피허락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피허락인이 품질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허락자는 상표 사용허락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허락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피허락인의 명칭 및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상표의 사용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경우 사용허락자는 해당 상표사용허락 사실을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신고하여야 하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상표사용허락이 신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56조 등록상표를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한 영업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한 영업액이 없거나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7조 ①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상표권자 명의, 주소 또는 그 밖의 등록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등록상표가 지정사용상품의 보통명칭이 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해당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 등록상표에 전항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정한다.

제58조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등록상표 취소결정 또는 취소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9조 ① 법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가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의 등록상표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결정에 대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상표 취소결정 또는 재심사 결정은 확정된다.

② 취소된 등록상표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이 이를 공고하며, 해당 상표권은 공고일부터 소멸한다.

제60조 단체표장권자 또는 증명표장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상표 관리책임을 게을리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단체표장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단체 구성원의 단체표장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증명표장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인의 증명표장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법, 관련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제61조 이 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등록출원을 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

는 위법한 영업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한 영업액이 없거나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2조 미등록상표를 등록상표로 사칭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미등록상표의 사용이 이 법 제15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한 영업액의 20퍼센트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한 영업액이 없거나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 ①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에 대하여 그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등록 심사·심리, 상표 위법행위 사건의 조사·처리 또는 부정경쟁 사건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사건 처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저명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상표 민사사건, 상표 행정사건 또는 부정경쟁 사건의 심리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한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의 필요에 따라 상표의 저명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상표의 저명 여부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상표 관련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정이 필요한 사실로서 확인되어야 한다. 상표의 저명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공중의 해당 상표에 대한 인지도
2. 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기간, 사용 방식 및 지역적 범위
3. 해당 상표에 대한 광고·홍보 활동의 지속기간, 정도 및 지역적 범위
4. 해당 상표가 보호받은 기록, 특히 저명상표로서 보호받은 기록
5. 해당 상표의 저명성과 관련된 그 밖의 요소

제64조 ① 생산자·영업자는 상품, 상품 포장 또는 용기 위에 “驰名商标(저명상표)” 라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광고·홍보, 전시 및 그 밖의 상업활동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5조 ① 상표대리기관 및 상표대리 종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업윤리와 직무규율을 준수하고 성실·주의의무를 이행하며, 위임인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임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도와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표대리기관은 위임인의 위임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또는 그 밖의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위임인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위임인이 등록출원하려는 상표가 이 법에 따라 등록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대리기관은 이를 위임인에게 명확히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표대리 종사자는 상표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스스로 위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리 종사자는 동시에 둘 이상의 상표대리기관에서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표대리 종사자는 자신이 서명하여 처리한 상표대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상표대리기관은 해당 기관 및 소속 상표대리 종사자의 관련 정보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에 신고하여야 한다. 각급 상표관리업무 담당부문 및 상표 집행부문은 상표대리기관 및 상표대리 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66조 ① 상표대리업계단체는 상표대리업계의 자율규제 조직이다.

② 상표대리업계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 가입요건을 엄격히 집행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강화하여야 하며, 업계 자율규범 및 징계규정을 제정하고, 업무교육과 직업윤리·직무규율 교육을 실시하며, 회원이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도록 조직·지도하고, 업계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업계 자율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징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상표대리업계단체는 회원 가입 및 징계 실시 상황을 적시에 사회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7조 ① 상표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그 밖의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를 부과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1.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조 또는 변조한 법률문서·인장·서명을 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경우
2. 사기, 기망 또는 다른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비방 등의 수단으로 상표대리 업무를 유치한 경우
3. 동일한 상표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쌍방 당사자의 위임을 동시에 수임한 경우
4. 위임인이 등록출원하려는 상표가 이 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해당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위임을 수임한 경우
5. 이 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이 법 제54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대리시장 질서를 교란한 경우

② 상표대리기관이 전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해당 상표대리기관의 상표대리 업무 취급에 대한 수리를 정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상표대리기관이 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상표대리기관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하여 성실·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임인의 적법한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표대리업계단체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68조 상표대리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경고를 부과하고 5천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한다.

1. 스스로 위임을 받아 상표대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동시에 둘 이상의 상표대리기관에서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그 밖에 상표대리시장 질서를 중대하게 교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9조 ① 국외 상표등록 심사·심리 또는 상표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중국 내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국무원 상표관리부문은 이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상표의 저명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사기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중국 내 위임인을 위하여 국외 상표등록 출원 또는 그 밖의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위임인의 이익 또는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타인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 및 처벌한다.

제70조 등록상표를 공중을 오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거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도 상표관리업무 담당부문 또는 상표 집행부문에 불만신고 또는 신고를 할 권리를 가진다.

제8장 상표권의 보호

제71조 상표권은 등록결정을 받은 상표 및 지정사용상품의 범위에 한정된다.

제7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

1.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2.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행위
3.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위조하거나 무단으로 제작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하는 행위
5.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등록상표를 교체하고 그 교체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다시 시장에 유통시키는 행위
6. 고의로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

해행위를 돕는 행위

7. 타인의 상표권에 그 밖의 손해를 가하는 행위

제73조 ① 등록상표에 포함된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 도형 또는 모델명이나, 상품의 종류·성질·품질·주요 원재료·기능·용도·중량·수량·가치·지리적 출처 및 그 밖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사항 또는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② 입체표장, 색채조합, 소리표장, 동적표장 등의 등록상표에 포함된 상품 자체의 성질로부터 발생한 형상·색채조합·소리·동적효과 또는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형상·색채조합·소리·동적효과 또는 상품에 실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형상·색채조합·소리·동적효과 등에 대하여는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③ 제공되는 상품의 용도, 적용대상, 활용장면 등 정보를 표시하거나 또는 진정한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관련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표권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전에 타인이 동일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사용하고 있었고, 그 상표가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원래의 사용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해당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상표권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적절한 식별 표시의 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 ① 이 법 제72조에 규정된 상표권 침해행위 중 어느 하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의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상표 집행부문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상표 집행부문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침해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침해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침해상품 및 침해상품의 제조 또는 등록상표 표시의 위조에 주로 사용되는 도구를 몰수하여야 한다.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위법한 영업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으며, 위법한 영업액이 없거나 위법한 영업액이 5만 위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권 침해행위를 실시하였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판매한 상품이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해당 상품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며 제공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판매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상표 집행부문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표 집행부문의 조정을 거쳤음에도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5조 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상표 집행부문은 법에 따라 조사·처리할 권한을 가진다.

② 상표권 침해행위가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즉시 공안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여야 하나 행정처벌은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인민법원은 즉시 사건을 상표 집행부문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인민법원이 상표 집행부문 또는 상표등록·관리업무 담당부문에 전문적 지원, 감정의견 제공 또는 침해물품의 무해화 처분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문은 즉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상표 집행부문은 이미 확보한 위법혐의 증거 또는 불만신고·신고에 근거하여 타인의 상표권 침해 혐의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관련 당사자를 신문하고, 타인의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하는 것
2. 당사자와 침해행위 관련 계약서, 송장, 장부, 증빙서류, 문서, 기록, 업무서신, 시청각자료, 전자데이터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것
3. 당사자가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종사한 혐의가 있는 장소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것
4. 침해행위와 관련된 물품을 검사하는 것.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물품이라

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봉인 또는 압류할 수 있는 것

5.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장래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등록 보존 조치를 취하는 것

② 상표 집행부문이 법에 따라 전항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상표권 침해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의 귀속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거나 권리자가 동시에 인민법원에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상표 집행부문은 사건 조사·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사유가 소멸된 후에는 사건 조사·처리 절차를 재개하거나 종료하여야 한다.

제77조 ①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사용허락료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고의로 상표권을 침해하고 그 정상이 중대한 경우에는 상기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권리자가 이미 입증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가 주로 침해자의 지배하에 있는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침해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장부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권리자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실제 손해,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및 등록상표 사용허락료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침해행위의 정상을 고려하여 500만 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권리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기를 명하여야 하며,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 및

도구에 대하여는 폐기를 명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 및 도구가 상업 유통경로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⑥ 위조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은 단지 위조 등록상표를 제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업 유통경로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① 상표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침해 혐의를 받는 자가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변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상표권자에게 침해행위 발생 전 3년 이내에 해당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표권자가 해당 3년 동안 등록상표를 실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한 침해행위로 인한 그 밖의 손해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침해 혐의를 받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임을 알지 못하고 이를 판매한 자가 해당 상품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고 제공자를 명시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9조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타인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거나 또는 침해하려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시에 제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적법한 권익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명령 및 재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0조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거나 장래에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에 따라 소 제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81조 악의적인 공모 또는 일방적인 기본사실의 조작 등의 방식으로 상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제재를 부과하여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2조 ① 상표등록·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반드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표등록·관리업무 담당부문 및 상표 집행부문과 상표등록·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상표대리업무 및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 상표등록·관리업무 담당부문 및 상표 집행부문은 내부 감독제도를 구축·개선하여야 하며, 상표등록·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의 법률·행정법규 집행 및 규율 준수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 상표등록·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대리업무 또는 상품의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직권 남용·직무태만·사익추구를 위한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함에도 상표등록을 허용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경우
2. 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행정처벌 등의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불만신고·신고를 접수하였음에도 법에 따라 상표관리 또는 집행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제85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9장 부칙

제86조 상표등록출원 및 그 밖의 상표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87조 ①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하여 유효하다.